제6기 평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

의 안 번 호	33

제안연월일 : 2026. 9. .
제 안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(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)의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보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사업개요

- 계 획 명: 제6기 평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
- 계획기간: 2027년 ~ 2030년(4개년)
- 계획내용: 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중장기적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
- 계획규모: 8대 추진전략, 44개 세부사업(과업)

① [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] 4대전략,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

전략 1	재가서비스 이용률 1.5~7.3%로 저조, 2030년 65세이상 46% 전망 → 노쇠예방·통합돌봄·응급안전을 잇는 돌봄체계 구축
전략 2	고용 정책시급성 1위, 노력체감도 최하위, 청년고용률 52.2% → 창업·자격취득·주거와 자활을 연계한 생활안정 경로 확충
전략 3	아동돌봄 시급성 2위, 일·가정 양립 인지 60.6% 대비 이용 8.7% → 돌봄시간 확보형 서비스와 교육비 부담 완화
전략 4	문화·여가 어려움 및 일부 읍면에 인구 편중 → 대중교통·특별교통수단 등 이동 지원으로 생활 격차 완화

② [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] 4대전략, 24개 세부과업으로 구성

전략 1	사회복지 지원사업(서비스) 신청경로 인지 5.3% → 찾아가는 발굴·통합사례관리와 부정수급 예방 추진
전략 2	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, 다기관 협업 체계 구성 → 공공·민간 담당 인력 교육 정례화와 처우개선 강화
전략 3	지방소멸 위기체감 91.5%, 인적안전망 410명 참여 → 군과 읍·면 협의체 내실화 및 민관협력으로 생활권 대응력 제고
전략 4	아동돌봄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 시급, 복지시설 일부 읍·면 편중 → 아동돌봄·교육·청년·자립 거점 확충

③ 5기 대비 6기 변화

· 전체 사업·과업 44개 유지(신규사업·과업 23개 추가)

· 사회보장 전략 성과지표는 주민 체감 효과 중심 성과지표 활용

· 지역발전 전략 대표과업 성과지표는 세부과업의 복합지표로 구성

○ 그간 추진현황

- 지역주민 욕구조사 실시: 2025년, 400가구 표본조사
- 수립 TF 구성·운영: 총 30명(복지정책과장 외 민·관·전문가)
- 실무 인터뷰 및 TF 회의: 2026. 8. 6.(목) ~ 8. 10.(월)
- 주민 공청회 개최: 2026. 8. 21.(금) 서울대 평창캠퍼스
- 행정예고: 2026. 8. 20.(목) ~ 9. 8.(화)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
- 대표협의체 심의: 2026. 9. 14.(월) ~ 9. 15.(화)
- 군의회 본회의 보고: 2026. 9. 22.(화)

○ 향후계획

- 강원특별자치도 제출: 2026. 9. 30.(수) ※법정 기한 준수

○ 기대효과

-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역복지 정책 추진
- 주민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운영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

관계법령 발췌

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제35조(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(이하 “지역사회보장계획”이라 한다)을 4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해당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· 군 ·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역사회보장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,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 · 군 · 구 의회의 보고(보고의 경우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)를 거쳐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